

보험계약의 변경(제5-21조관련)

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-21조에 의한 보험가입금액, 보험종목 또는 보험기간 등을 변경할 때의 계산기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에는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고 다음 공식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.

$$\text{지급액} = tWx(y) \cdot (S - S') / S$$

$tWx(y)$: 당초계약에 대한 변경당시의 해약환급금 해당액

S : 당초계약의 보험가입금액

S' : 감액후의 보험가입금액

2. 보험종목,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납입기간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추가납입토록 하거나 장래의 보험료에 충당한다.

$$| tWx(y) - tW'x(y) |$$

$tWx(y)$: 당초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 해당액

$tW'x(y)$: 변경된 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 해당액

3.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할 경우 감액완납보험가입금액은 다음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.

$$\text{감액완납보험가입금액} = S \cdot \frac{tWx(y)}{tW'x(y)}$$

$tWx(y)$: 당초계약에 대한 변경당시의 해약환급금 해당액

$tW'x(y)$: 변경당시 일시납 해약환급금 해당액

S : 당초계약의 보험가입금액

4. 기타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방법